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83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로수 진단조사의 예외 규정 신설	2
IV.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2. 2.

다. 회 부 일 : 2026.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12조).

Ⅲ. 검토의견

1. 가로수 진단조사의 예외 규정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생략)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 가로수의 제거
<신설>	2. 가로수의 가지치기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⑦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및 기간, 시행한 조치의 일시·대상·사유 등 공표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단조사¹⁾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참고자료1: 진단조사 개요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진단조사 제도는 민원³⁾ 해결 및 도시개발·정비 등을 위해 가지치기 및 가로수 제거가 빈번하게 발생⁴⁾함에 따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경관 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2024년도 7월부터 시행된 바 있음.

【 경관이 훼손된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



※ 자료: 산림청

그러나 동 규정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태풍, 집중호우, 교통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진단조사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⁵⁾이 있음.

3) 상가 간판 가림, 주택 일조량 부족, 뿌리 발달로 인한 보도 파손 등

4) 조선일보, “네모·세모·둥그라미 가로수… 흉측한 ‘닭발’은 이제 그만”, 2024. 5. 25.

5) 뉴스핌, “어기구 ”재난 앞에서 질차 타령할 수 없다“…가로수 ‘선조치·후 공표’ 법제화”, 2026. 2. 2.

【 태풍 등으로 인한 수목 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19	'20	'22	'23	'24	'25. 8
계	20,155	7,270	8,939	2,905	864	78	99
서울	379	356	17	2	4	1	-
부산	2,547	-	2,285	164	98	2	-
대구	461	380	56	17	8	7	2
인천	144	35	104	1	4	11	-
광주	102	76	5	17	4	1	7
대전	88	41	15	16	16	12	3
울산	484	-	194	250	40	-	-
세종	5	2	0	-	3	-	1
경기	2,130	2,017	76	33	4	3	-
강원	130	50	80	-	-	-	-
충북	186	140	11	11	24	8	-
충남	728	294	91	5	338	19	3
전북	1,005	944	20	11	30	3	1
전남	3,449	2,820	3	616	10	1	19
경북	5,067	9	3,917	1,037	104	-	-
경남	2,294	72	1,423	622	177	3	63
제주	779	34	642	103	-	7	-

※ 주: 년도별 대형 피해 발생 태풍('19년 링링, '20년 바비, 마이삭, 하이선, '22년 힌남노, '23년 카눈)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6)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

위하여 긴급하게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진단조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이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후 승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간섭으로 보이지는 않음⁷⁾.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개정안과 같이 각종 재난 상황 및 응급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7)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⁸⁾

문 의 처
02)6788-5423

8)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 진단조사 개요

○ 대 상 :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로수

○ 조사내용 :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가. 현황조사

- 1) 가로수의 위치, 수종 및 수령 등 일반 현황
- 2) 지지대, 당김줄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
- 3) 전선, 간판 등 가로수 주변 시설물 현황

나. 세부 진단조사

- 1) 가로수의 균열, 썩음 및 병해충 감염 등 피해상태
- 2) 가로수의 미관, 생육상태, 통풍·채광 정도, 주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도로교통에의 장애 정도
- 3) 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의 필요성 및 타당성
- 4) 3)에 따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의 적정한 실행 시기 및 규모
- 5) 4)에 따라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실행한 후 수세 회복 계획, 수형 회복계획 및 병해충 방제계획 등 사후 관리방안